



제410회 국회 (정기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중협박죄 신설〉

■ 박대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4038호)

2023. 1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성 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3
3. 해외사례	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대출의원 등 25인
2. 제 안 일 : 2023. 8. 28.
3. 회 부 일 : 2023. 8.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림역 살인 사건, 서현역 살인 사건 발생과 함께 온라인 등에 살인예고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 대한 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다수 게시됨에 따라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일반적 규정이 없어 처벌의 공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형법」상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위협하거나 이러한 위해를 가할 것을 가장하여 공중을 협박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일반적 처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형법」 제2편(각칙) 제5장(공안을 해하는 죄)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위협하거나, 이러한 위해를 가할 것을 가장하여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118조의2(공중협박) ①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위협하거나 이러한 위해를 가할 것을 가장하여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u>②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u>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 온라인을 통한 살인예고 게시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위협하는 행위는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만으로 사회 일반에 공포심을 주고 공공의 안녕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형사적 대응의 필요성이 적지 않으나,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현행법에 따른 대응에 한계가 있음.

① 「형법」 제283조에 따른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판례에 따르면 협박죄는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상대방과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경우에 성립되며,¹⁾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바,²⁾ 피협박자가 특정되지 않은 협박행위에 대하여 협박죄의 적용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고, ② 「형법」 제255조에 따른 살인예비죄는 범죄를 실현할 의사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실행행위를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준비행위가 있을 것을 요하므로, 흉기 구입 등 살인죄의 실현에 기여하는 행위가 없는 경우 해당 범죄로 처벌하기 어려우며,³⁾ ③ 「형법」 제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공무집행 저지 또는 곤란, 공무방해의 의사의 존재 등에 대한 입증이 요구되고,⁴⁾ ④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공포심 유발 문언, 영상 등의 유통죄⁵⁾는

1) 대법원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2) 대법원 2006도546

3) 대법원 2009도7150

4) 대법원 2013도13217

5)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그 정보를 특정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따라서 이와 같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 등 범죄예고 행위에 대한 현행법 상 한계가 존재하는 점, 해당 행위가 대중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여 공공의 안전과 평온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⁶⁾

○ 다만, 개정안은 공중협박죄의 구성요건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위협하거나 이러한 위해를 가할 것을 가장하여 공중을 협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문리해석에 따르면 공중에 대한 협박의 요건은 ‘위해를 가할 것을 가장한 경우’에 한정되고,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위협’하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 즉 현행법에 따른 협박죄에 포섭되는 범죄행위는 공중에 대한 협박과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오인될 수 있는 바, 이를 개정취지에 맞게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협박은 고의범으로서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고의가 있어야 할 뿐 진실로 해악을 실현할 의사는 요하지 아니하는바,⁷⁾ ‘위해를 가할 것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6) 다만,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측면에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협행위로 침해되는 법익과 비교할 때 가벌성이 있는지 여부, 기존 법률로도 해당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국회입법조사처, 살인예고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협행위 규제 논의의 쟁점, NARS 현안분석 제306호, 2023.11.)

을 가장하여’라는 구성요건을 명시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재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유포 또는 게시한 자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임.⁸⁾

3. 해외사례⁹⁾

①미국의 경우 뉴욕주¹⁰⁾, 버지니아주, 일리노이주, 텍사스주, 펜실베이니아주 등의 형법에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협박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며, ②독일 형법은 ‘개인의 자유에 관한 죄’ 항목(제18장)의 일반 협박죄(1년 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형) 외에 ‘공공질서에 대한 죄’ 항목(제7장)에 ‘범죄위협에 의한 공공평온교란죄’(3년 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형)를 규정하여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상당한 방법으로 소요·강간·살인·상해 등의 범죄행위를 범할 것이라

7) 신호진, 형법요론, 문형사. 2022, p.700

8) 의안번호 제23831호(김영식의원 대표발의, 2023.8.16. 발의), 제23835호(홍석준의원 대표발의, 2023.8.16. 발의), 제24004호(김용판의원 대표발의, 2023.8.24. 발의)

9) 각국 주재 국회입법관 조사자료 및 법무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10) 뉴욕주 형법 §490. 20.[테러협박]

1. 공중 일반을 겁먹게 하거나 협박할 의도, 협박이나 위협을 통해 정부기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의도, 또는 살인, 암살, 또는 납치를 통해 정부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의도를 가지고 특정 범죄(살인, 방화, 납치 등)를 범하거나 범해지도록 할 것임을 위협함으로써 특정 범죄에 대한 합리적 기대나 압박한 실행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킨 사람은 테러협박죄에 처한다.

2. 이 조에 따른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해당 범죄를 실행할 의도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대상자에게 위협이 도달하지 않았다는 항변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죄는 D급 중범죄에 해당한다. ※ D급 중범죄 : 징역 7년 ↓

고 위협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고,¹¹⁾ ③오스트리아 형법은 ‘자유에 관한 죄’ 항목(제3장)의 일반 협박죄(1년 이하 자유형) 외에 ‘공공의 평온에 관한 죄’ 항목(제20장)에 ‘대중협박죄’(3년 이하 자유형)를 규정하여 생명, 신체, 재산 등의 침해에 대한 협박으로 국민 또는 다수의 사람을 공포와 불안에 빠뜨리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¹²⁾ ④스위스 형법은 ‘자유에 관한 죄’ 항목(제4편)의 일반 협박죄(3년 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형) 외에 ‘공공의 질서에 대한 죄’ 항목(제12편)에 ‘일반 대중에 대한 공포심 또는 불안감 조성’(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을 규정하여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협을 위협하거나 가장하여 대중을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음.¹³⁾

11) 독일 형법

제7장 공공질서에 대한 죄

제126조 (범죄위협에 의한 공공평온교란) ①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상당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를 것이라고 위협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제125조a 제2문 제1호 내지 제4호의 소요
2. 제177조(성적강요, 강간)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178조(성적강요, 강간치사)의 성적자기결정에 관한 범죄
3. 도살(제211조), 고살(제212조), 인종학살(국제형법 제6조), 반인도적 범죄(국제형법 제7조), 전쟁범죄(국제형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또는 제12조)
4. 위협한 상해죄(제224조), 중상해죄(제226조)
5. ~ 8. (생략)

②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자신의 확정적 인식과 달리 제1항에 규정된 위법행위의 실현이 임박한 것처럼 기망한 자도 전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제18장 개인의 자유에 대한 죄

제241조(협박) ① 타인에 대하여 타인 또는 타인과 가까운 사람에 대한 중죄의 실행을 협박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2) 오스트리아 형법

제20장 공공의 평온에 관한 죄

제275조(대중협박) ① 생명, 건강, 신체의 불가침성, 자유 또는 재산에 대한 침해를 고지한 협박으로 국민 또는 다수의 사람을 공포와 불안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제3장 자유에 관한 죄

제107조(위협한 협박) ① 타인을 공포와 불안에 빠지게 할 목적으로 위협하게 협박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3) 스위스 형법

제12편 공공의 질서에 대한 죄

제258조(일반 대중에 대한 공포심 또는 불안감 조성) 누구든지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협을 위협하거나 가장하여 대중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제4편 자유에 대한 죄

다만, 프랑스, 영국, 일본 등의 경우 공중협박 행위 자체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프랑스의 경우 테러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의 안녕을 심각하게 해치려는 목적으로 구체적인 행위에 착수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며, 영국의 테러법(Terrorism Act 2000)¹⁴⁾ 또한 일반 대중의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의 위협 또한 테러행위로 포함하고 있으나 정치적, 종교적 또는 이념 목적 달성을 위할 것과 준비행위가 있을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 형법에는 불특정다수에 대한 살인·방화 등을 예고한 공중협박 행위에 관한 별도의 처벌규정은 없으며, 사안에 따라 형법 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함.

문 의 처
02) 6788-5048

제180조(협박죄)

1. 누구든지 심각한 위협을 통하여 타인을 공포심 또는 불안감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14) 영국 테러법(Terrorism Act)

제1조 테러행위 정의

- (1) 동 법률에서 정의하는 “테러행위”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행위의 실행 또는 위협임;
- (a) 아래 (2)항에서 정하는 행위,
 - (b) 정부 또는 국제적 정부기관에 영향을 미치거나 일반 대중의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의 실행 또는 위협, 그리고
 - (c) 정치적, 종교적, 또는 이념 목적달성을 위한 행위의 실행 또는 위협
- (2) 동 항에서 정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
- (a) 타인에 대한 심각한 폭력행위
 - (b) 타인의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행위
 - (c) 행위자를 제외하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
 - (d) 일반 대중의 건강 및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행위 또는
 - (e) 전자통신 시스템을 심각하게 침해 또는 방해하려는 행위

제5조 테러행위 준비

- (1) 다음의 목적을 가지고, 테러행위 준비에 가담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됨.
- (a) 테러행위를 자행하거나;
 - (b) 타인의 테러행위를 돕는 행위;
- (2) 위 (1)항은 행위자의 목적이나 준비행위가 어떤 특정한 테러행위 또는 일반적인 테러행위와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됨
- (3) 동 조항에 따라 유죄판결 받은 자는 종신형에 처함.